

인천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가단2566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098,683원 및 그 중 19,526,067원에 대하여 2023. 6. 23.부터 2023. 10. 5.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2. 3.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 3. 25. 접수 제962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1) 원고는 2020. 4. 20. 피고 A과, 피고 A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이행금,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을 적용한 손해금, 관련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21. 5. 7.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2020. 5. 8. 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이 2023. 2. 7.경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3. 6. 9.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게 대출금 19,526,06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A에게 발생한 채무는 2023. 6. 22. 기준 합계 20,098,683원[= 대위변제금 19,526,067원 + 2023. 6. 9.부터 2023. 6. 22.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52,426원 +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 493,330원 + 추가 보증료 26,860원]이며,

2020. 12. 30.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7%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96242호)가 2022. 3. 25. 마쳐졌다(이하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들은 1996. 12. 2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3. 1. 30.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구상금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증여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4. 20. 피고 A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이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2020. 5. 8.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일인 2022. 3. 25.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22. 5. 11. 국세 20,000,000원을 체납하고, 2022. 11. 23.경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다가 2023. 2. 7.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원고가 기업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이상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20,098,683원의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8,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A의 ① 적극재산은 시가 357,150,000원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31,928,000원의 인천 옹진군 C 전 1636㎡, 시가 600,000,000원의 인천 연수구 D 대 279.6㎡ 및 그 지상 건물로 합계 989,078,000원이고, ②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E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62,500,000원, 인천 옹진군 C 토지를 담보로 한 F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23,175,787원, 체납세액(부평세무서) 21,880,940원(2022. 3. 정기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체납보험료 총 2,984,800원(2022. 3. 보험료까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된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0,000,000원으로 합계 130,541,527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 A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인천 연수구 D 대 279.6㎡ 및 그 지상 건물은 2022. 12. 20. 대물변제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소극재산의 합계는 299,934,805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설령 위 대물변제계약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는 G은행 카드로론채무, 일부 체납세액, 일부 체납보험료, 재산세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한 채무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식회사 H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채무들은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 합계액 989,078,000원이 소극재산 합계액 130,541,527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B에게 이전된 후에도 피고 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한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인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별지